

# 제일풍경채 검단Ⅳ(AA22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2BL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25층, 10개동, 총 1,048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76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

(단위 : ㎡)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배정 세대수 (예비)	입주 예정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4A	84.9343	25.1551	110.0894	56.9474	167.0368	48(240)	`27년 1월 (예정)
	84B	84.8582	25.4498	110.3080	56.8963	167.2043	19(95)	
	84C	84.8731	26.9909	111.8640	56.9063	168.7703	9(45)	
	110A	110.9706	33.1451	144.1157	74.4044	218.5201	-	
	110B	110.9098	33.9184	144.8282	74.3636	219.1918	-	
합계							76(380)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25)	2(10)	1(5)	8(40)
	장기복무 제대군인	5(25)	2(10)	1(5)	8(4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5(25)	2(10)	1(5)	8(40)
	중소기업 근로자	5(25)	2(10)	1(5)	8(40)
	북한이탈주민	4(20)	2(10)	1(5)	7(35)
	우수선수	4(20)	2(10)	-	6(30)
	이주대책대상자	4(20)	2(10)	-	6(30)
	장애인	인천광역시	8(40)	3(15)	2(10)
경기도		4(20)	1(5)	1(5)	6(30)
서울특별시		4(20)	1(5)	1(5)	6(30)
계		48(240)	19(95)	9(45)	76(38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까지 가능하며, 상기 배정세대의 "( )"는 예비 추천자 수 임.

※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추천순위에 의함.

### □ 분양일정(예정사항)

구분	일정(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3.10.27.(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	2023.10.27.(금)	- 건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33번길 1
특별공급 접수일시	2023.11.06.(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09:00 ~ 17:30)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당첨 & 예비순번 발표)	2023.11.15.(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터넷 청약 접수가 원칙이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65세 이상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방문 접수 받지 않음.

## II. 신청자격 안내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10. 2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이주대책대상자는 제외)

구분	신청자격
청약예금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예치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내에 있는 자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첨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Ⅲ.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Home)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Ⅳ. 기타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3.10.27.(금)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콜센터(1551-1048)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0.27.(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제일풍경채 검단Ⅳ(AA22BL)” 콜센터(☎1551-1048)로 문의 바랍니다.**

